


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시 조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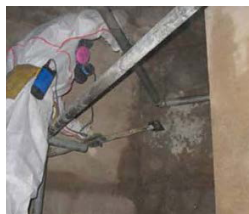
제3편 보건기준

제2장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495조 ~ 제497조

1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시의 조치

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·제거작업

- 가. 창문·벽·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(실내 작업장만 해당)
- 나.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
- 다.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
- 라. 위생설비(평상복 탈의실,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)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(실내 작업장만 해당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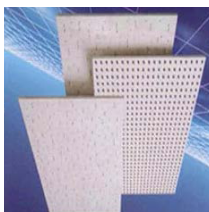
분무재 해체·제거작업

파이프 보온재 해체·제거작업

2 석면이 함유된 벽체, 바닥타일 및 천장재 해체·제거작업

(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)

- 가. 창문·벽·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
- 나.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
- 다. 작업장소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 기록·보존
(벽체·바닥타일·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만 해당)



천장재 및 바닥타일

밀폐 및 음압유지

해체·제거작업 모습

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·제거작업

- 가.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
- 나.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(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)
- 다.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 밀폐 및 환기설비가 동 중단할 것



지붕재



습식작업 및 해체·제거작업

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·제거작업

- 가. 창문·벽·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(실내 작업장만 해당)
- 나.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조치 실시(실외 작업장만 해당)
- 다.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

2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및 흩날림 방지

- 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
-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청소 등의 조치 중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처리



석면함유 잔재물 처리 시 표지



폐기물 표지부착

-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함
- 청소시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안 됨



석면폐기물 포장 예



포장된 페슬레이트와 잔재물의 예



석면함유 잔재물의 청소 예



3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

- 석면해체·제거작업 중 석면 함유율이 1%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해당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

제489조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 수립

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

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·착용

제492조 출입의 금지

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

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

제495조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시의 조치

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등의 처리

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

4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조치

- 석면을 1% 이상 함유한 폐기물(석면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·방진마스크·작업복 등을 포함) 처리 작업으로서 석면분진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시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
